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11. 27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32회 제2차정례회 제1차위원회 (2007. 11. 27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정 상 택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전부개정 2007.5.11 법률 제8423호) 및 동법 시행령(전부개정 2007.10.4 대통령령 제20306호)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면서, 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타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 개정 골자

1) 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
2) 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타 조례를 부칙조항의 “다른 조례의 개정” 방식으로 일괄 개정함 (부칙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07.5.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07.10.4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를 비롯한 16개의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